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2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한국화학섬유협회는 2020년 11월 26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이 조사신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을 갈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월 27일 이를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1-2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1년 11월 18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의결하였으며 2021년 11월 25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령 제888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법령→공고→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 붙임: 1.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